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2,458,099	44,473,743
일반회계	1,351,073,689	40,532,211
특별회계	131,384,410	3,941,532
공기업특별회계	86,483,121	2,594,4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974,563	1,169,2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508,558	1,425,257
기타특별회계	44,901,289	1,347,039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881,202	26,4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97,312	161,91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660,695	229,821
주택사업특별회계	41,959	1,259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3,712,000	711,360
주차장특별회계	7,161,580	214,847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668	2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5,873	1,3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00,7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